2021. 10. 14.(목) 10:00
제291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27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군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안 제4조~제7조)

○ 먹거리보장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2조)

5. 관계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의,

○ 제정이유

- 달성군민의 행복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먹거리 보장을 위한 5년마다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과 매년 실시계획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함
-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먹거리보장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 안 제11조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에 예산 범위 내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나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 등으로 공공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조례안은 통합적인 먹거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 제정의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달성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먹거리”란 식품 및 농·축·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　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합리적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지역 먹거리”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된 먹거리를 말한다.

5.“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생산·가공된 지역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6.“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 관련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기본권(이하 이 조에서 “먹거리 기본권”이라 한다)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한다.
③ 군수는 먹거리정책에 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적극 협력으로 먹거리에 대한 군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① 군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자유롭고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군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군민은 합리적인 먹거리 소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과제, 추진목표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 설명회,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먹거리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먹거리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시계획의 추진결과 평가 등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먹거리 이용 실태 및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실시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와 군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을 할 때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먹거리보장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확대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2. 실시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심의·의결
3.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정책 제안
4.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포럼 및 정책제안
5. 먹거리 정책의 군민 홍보
6. 먹거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선택 역량 강화를 위한 먹거리 교육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현과 먹거리 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라. 먹거리와 관련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소속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먹거리정책 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운영계획 수립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2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격려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활동 지원, 지원 절차,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보고·검사, 지방보조금의 반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5.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 제정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달성군에서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에서 제 5조까지는 활동 지원, 지원 절차,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에서 제 9조에 보고·검사, 지방보조금의 반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 소방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달성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로, 관내에는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수성소방서(가창)에 의용소방대가 편성되어 총46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달성군 의용소방대 현황]

2021. 9.30.기준(단위: 명 / 천원)

구 분	총 계	달성소방서	강서소방서	수성소방서(가창)
정 원	**530**	300	170	60
현 원	**468**	249	166	53
2021년 보조금 지원	**8,000**	4,000	2,000	2,000

○ 연간 활동 내역

- 화재예방 캠페인 및 화재예방활동(부스설치) 전개
- 산불예방순찰활동. 산불진화활동, 화재복구
- 재난복구활동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받은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중복 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고 · 검사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비용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반환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군수는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②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소대"라 한다)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경비부담)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을 위한 소집수당
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
5.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
6. 재해보상을 위한 재해보상금
7.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27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등 2인

3. 제안사유

○ 우리군의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드론산업의 육성 및 사업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재정지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10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나. 합 의 :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토지정보과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 제정이유

- 드론산업에 대한 국가정책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시행(2020. 5. 1.)중에 있으며
- 동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조성과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 편의증진과 타 지방자치단체에 선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로서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함
-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구체적 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드론산업의 육성과 활용사업의 확대에 대해 내용을 명시함
-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재정지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드론 활용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부문별 구체화된 추진전략 발굴 노력과 개인 정보 침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드론의 활용 >

드론은 △건설현장의 공사추진 상황 확인과 실적관리 △사진·영상 촬영과 이와 연계된 산업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산림,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비료·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만큼 사업시행 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드론 운행 및 드론산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9월 28일

2. 제 출 자 : 김은영 의원 등 2명

3. 제안사유

○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일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검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지급기준 상향(제13조 관련)

<table>
<tr><th>현 행</th><th>개정안</th></tr>
<tr><td>[별표]
결산 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액 수</th></tr>
<tr><td>일 비</td><td>100,000원</td></tr>
</table></td><td>[별표]
결산 검사 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액 수</th></tr>
<tr><td>일 비</td><td>150,000원</td></tr>
</table></td></tr>
</table>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 **개정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일비) 지급기준이 2011년 이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수당(일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필요.

※ [붙임 참조]

- 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현황

○ **주요내용**

- 제13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일비) 지급기준 상향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

일비: (종전)100,000원 ⇒ (변경)150,000원으로 조정

○ **검토의견**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참고자료 1부.

2) 조례안 1부.

3) 관계법령 1부.

[참고 자료]

결산검사위원 수당(일비) 현황

1. 대구시 : 15만원 상당 (2018.10. 1. 개정)

구 분		금 액
수당 등	수 당	110,000원
	교통비	20,000원
	식 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

2. 달서구, 수성구, 서구

- 수당(일비): 10만원(現) -> 15만원으로 증액(추진 중, 2022년 예산 반영)

※ 타 지방자치단체 수당(일비) 개정 현황

- 당진시, 순창군, 완주군, 인천동구, 전주시 : 10만원 -> 15만원
- 대전시 : 11만원 -> 15만원
- 강진군 : 10만원 -> 회계사, 세무사 15만원, 그외 13만원
- 담양군 : 10만원 -> 회계사, 세무사 15만원, 그외 12만원
- 장흥군 : 10만원 -> 13만원
- 인천시 : 15만원 -> 20만원
- 청주시 : 10만원 -> 20만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
<td>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액 수</th></tr>
<tr><td>일 비</td><td>100,000원</td></tr>
<tr><td>여 비</td><td>(생 략)</td></tr>
</table>
</td>
<td>
제13조(지급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표
(단위 : 원)
<table>
<tr><th>구 분</th><th>액 수</th></tr>
<tr><td>일 비</td><td>150,000원</td></tr>
<tr><td>여 비</td><td>(현행과 같음)</td></tr>
</table>
</td>
</tr>
</table>

【별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액 수
일 비	150,000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 국내여비 기준표상의 부군수 상당액

붙임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안 제5조)

○ 문화도시 조성 지원(안 제6조)

○ 문화도시 추진단 설치(안 제7조)

○ 문화도시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제15조)

○ 문화도시센터 설치(안 제16조 ~ 제17조)

○ 문화도시 사업 위탁운영(안 제18조 ~ 제19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550백만원 (2021년 본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21. 9. 2. ~ 9. 23. (21일간)

- 의견접수 : 1건 (반영)
  - 내용 : 문화도시 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 중 호선으로 하고 군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함으로 수정하기를 바람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조례안의,

○ 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문화도시 종합계획수립, 문화도시 조성 지원
-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문화도시추진단, 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는 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검토의견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려는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 타 지역 조례 각1부 / 비용추계서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를 통한 도시전략을 구축하고, 문화도시에서 문화의 목표가 시민의 삶과 일상 자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임을 확인하며, 시민 참여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힘씀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을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문화·사회·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 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문화와 관련한 군 정책을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군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군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의 성과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조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지역관광과 연계한 문화도시 홍보에 관한 사업
4.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신청, 지원결정, 정산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문화도시추진단 설치)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문, 참여를 하는 등의 자원봉사 활동에 응하기 위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수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문화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의 지정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수의 승인을 받고 별도의 독립된 운영 규정과 재무ㆍ회계 규칙 등을 만들 수 있다.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ㆍ홍보ㆍ운영 및 인력관리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문화예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을 교부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수행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평가 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타 지역 조례**

김해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2019.10.04 조례 제1448호

(일부개정) 2020.06.26 조례 제1524호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김해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김해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 구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계층, 지역, 성별, 인종 등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4항의 사항
2.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계획의 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 내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역사·도시계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문화도시센터를 둘 수 있다.

② 문화도시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전문법인, 지역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448호 2019.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포항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2019.09.17 조례 제17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포항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문화 활동의 참여와 문화를 향유하도록 하고, 포항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문화도시”란 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고, 시민들이 문화창조 및 향유의 주체가 되어 문화로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성별, 연령, 종교, 장애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제8조(추진위원회 구성 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4. 대학교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2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추진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항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등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수탁자에 대하여 서류와 장부에 대한 검사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수탁자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3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6년

○ 주요내용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비용

- 지역문화진흥법 상 법정 문화도시 지정사업 공모 추진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예비문화도시 단계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운영비

○ 문화도시 단계 : 각종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비

3. 관련조문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비 및 운영비

나. 추계 결과 : 6년간 15,5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반영(공모사업 선정 시 국·시비 보조)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별첨

6. 작성자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최수정

[별 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6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의존재원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세 출		**55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문화도시 조성		55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재원 조달		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550,000
의존재원	소 계	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2,250,000	11,250,000
	보조금							
	지 방 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지방세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군비		5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750,000	4,30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공공체육시설 추가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하여 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정비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 추가 (안 제9조5호)

○ 안 별표 1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읍·면 명칭변경(현풍면을 현풍읍으로 수정)
- 체육시설(진천천 파크골프장, 달성보파크골프장 등 4개소)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안 별표 2

- 군민체육관 강습료 연령구분 삭제 및 주1회, 2회, 3회로 세분화
- 달성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 강습료를 개인, 단체로 세분화
- 실외·실내테니스장 단체 사용료 토·공휴일 표기 오기에 따른 정정
- 테니스 강습료 주2회, 3회로 세분화

- 비고
  ·1, 2호 체육경기 추가, 1호에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 추가
  ·8호 할인대상자 증명 관련 추가

○ 안 별표 3
- 달성국민체육센터 헬스장 그룹수업, 1회 입장요금 신설
- 요가, 에어로빅 사용료는 군민체육관 강습료로 이관되어 삭제
- 헬스장, 수영장 이용시간을 표로 수정 및 마감이용시간 안내 추가

5.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한 체육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체육수요에 대응한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및 상한액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9조5호는 공공체육시설 부적격 사용자에 대한 제한규정 추가
- 안 별표 1. 체육시설(진천천 파크골프장 등 4개소)의 명칭 및 위치 추가
- 안 별표 2. 군민체육관, 달성스포츠파크(다목적체육관), 테니스 강습료의 세분화와 실내·외 테니스장 사용료 표기 오기 정정
- 안 별표 3. 달성국민체육센터(헬스장) 그룹수업 및 1회 입장요금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시설사용료 기준 마련과 공공체육시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개정 조례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입장의 제한)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경기장, 구장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현 행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생 략)		
군민체육관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생 략)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면 비슬로 675	- 테니스장
(생 략)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신 설)		
(생 략)		

개 정 안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민체육센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현행과 같음)		
군민체육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현행과 같음)		
현풍테니스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달성스포츠파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진천천 파크골프장	화원읍 구라리 188-1	-파크골프장
달성보 파크골프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창 파크골프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가한정 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현행과 같음)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강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어린이	월 80,000 (주 2회)		-	
			일반	월 60,000 (주 3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생 략)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 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 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강당	주 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 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회 원 권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달성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프로그램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지도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생 략)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사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달성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 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조경기장	축구장	주 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체육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	
			야간 (1시간)	50,000		-	
		강습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90,000 (주 3회)		-	
				월 70,000 (주 2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개인사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	
(현행과 같음)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다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2,000	면당 16,000	면당 24,000	면당 32,000
			야 간 (2시간)	면당 24,000	면당 28,000	면당 48,000	면당 56,000

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단체	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00,000	-	-	-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4,000	-	-
		야 간 (2시간)	면당 34,000	면당 44,000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단체	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50,000	-	-	-
		야 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현 행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80,000			
		1회	20,000			
	실외테니스장	1개월(주 4회)	130,000			
		1회	15,000			

비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1조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180,000		-	-
		주 2회	12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30,000		-	-
		주 2회	75,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비고

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
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
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
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 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
7.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
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

현 행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세~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월 50,000원														
	요가 에어로빅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40,000	30,000		3,000		2,000		1,000						
비고	1.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 (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주 ○ 수영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 일,공휴일 : 09:00 ~ 18:00(월2회 휴관)

○ 헬스장 사용시간 구분
- 평 일 : 06:00 ~ 22:00
- 토 요 일 : 06:00 ~ 18:00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관련)

시설명	구분	성인 (만19세 이상)			중.고생 (만13~만18세)			초등 (만6~12세)			유아 (만6세 이하)	아쿠아로빅		1회입장요금		
달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주2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입장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3,200				3,000		2,000		1,000			
비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장기등록(3개월이상)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4. 단체입장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 이용시간

구 분	평 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헬스장	06:00 ~ 22:00	06:00 ~ 22:00	휴 관
수영장	06:00 ~ 22:00	06:00 ~ 18:00	09:00 ~ 18:00

※ 매월 1째주, 3째주 일요일은 전관휴관(월2회)
※ 고객의 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붙임 1 상위 및 관계 법령(발췌)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 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 ·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Ⅰ. 개 요

1. 제 출 일 : 2021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가 개정(2021. 3. 23.)되어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1조)

○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12조)

5. 관계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 **개정이유**는 해당 조례의 상위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 일부 개정(2021. 3. 2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11에서 제목“(운영위원회 설치 등)”을“(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로,“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로,“운영위원회”를“심의위원회”로 한다.

- 안 제12조에서 제목“(실행위원회 설치 등)”을“(실무위원회 설치 등)”으로,“실행위원회(이하“실행위원회”라 한다)”를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한다.

○ 검토의견

-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의 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실행위원회 설치 등)”을 “(실무위원회 설치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실행위원회”를 각각 “실무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생략)	제11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현행과 같음)
제12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12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3. 23.>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